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동 기능 전환 및 구·동간 사무조정과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수 규모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방 하부조직(통·반)을 활용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16조의2)
 - 구청장이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 등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서류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 준용 규정과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검 토 의 건

- 지방세 납세고지서(납부·납입고지, 독촉·체납처분) 송달업무가 지방세 과세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납기 내 징수율이 높고 낮은 것은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에 있어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 지금까지 고지서 송달방법은 관내는 동에서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이 교부하고 본세 일정액 이상과 독촉·최고장은 동기우편, 기타 관외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동 기능 전환으로 구·동간 사무조정이 납세고지서 송달업무에 차질이 있어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봄.
- 이 조례안에서 서류의 송달은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위탁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세수규모와 과세대상 증가 등으로 지방세업무량 팽창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구에서의 직접 교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동기우편 송달시 공공요금 과다 소요, 고지서 반송분의 추적 송달의 어려움에 따른 고지서송달을 저조로 지방세 납부를 저조가 예상되므로 통·반장을 활용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징세비용절감 등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사전계획과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